

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가. 2005. 1. 30일자 「영유아보육법」의 개정
- 나. 2005. 7. 31일자 사회복지위원회 폐지에 따른 공립보육시설 위탁 운영자 결정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 심의기능을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
- 다. 종사자의 복무규정(연가 및 특별휴가)을 현실화 시켜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」에 준하도록 변경
- 라. 영·유아 보육사무가 2004. 6. 12일자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으며 2005. 6. 23일자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변경됨에 따른 보육업무 관장부서 변경

2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고용정책기본법」

3. 주요골자

- 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에 따른 법 조항, 조문 및 용어 변경
 - 공립보육시설의 개념 : 영유아보육법 제7조 → 영유아보육법 제10조 (안 제1조)
 - 보육시설 입소순위 변경 :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근거한 영·유아 (안 제4조)
 - 보육료 등의 수납 : 영유아보육법 제24조 → 영유아보육법 제38조 (안 제5조)
- 나. 사회복지위원회 폐지 (안 제6조, 제10조, 제14조)
 - 공립보육시설 위탁 운영자 결정 및 어린이집 종사자이 징계처분 심의기능 사회복지위원회 → 보육정책위원회

- 다. 종사자의 복무규정(연가 및 특별휴가) :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
공무원복무조례」 준용(안 제13조)
- 라. 보육업무관장부서 변경 : 보건복지부 → 여성가족부 (안 제17조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일부개정 건은

- 2005. 1. 30부로 「영유아보육법」이 개정되고 2005. 7. 31부로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자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 심의기능을 종전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조정하고
- 종사자의 연가 및 특별휴가 등 복무규정을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」에 준하도록 현실화 시켜 근무의욕 고취와 업무능률 제고, 자궁심고양 등 순기능 확대를 통한 보육행정의 질적 향상과 고용안정에 일조를 기한다고 생각되며
- 또한 영·유아 보육사무 관장부서가 2004. 6. 12일부로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고 2005. 6. 23일부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변경됨에 따라
- 위원회변경과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에 따른 기능폐지와 자구수정 등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 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기한다고 판단되며
- 특히 영·유아 보육사무 관장부서 변경과 사회복지위원회 폐지 등이 관련법과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

위 조례 일부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